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6. 6. 2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사)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.

1. 경기력향상위원회
2. 선수위원회
3. 심판위원회
4. 여성위원회
5. 기타 정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

제2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2명 이하
3. 위원 5명 이상 11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제4조(위원의 위촉 등)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3.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(경기력향상위원회에 한정한다).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

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8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제척 및 기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

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2조(경비의 지급) 정관 제47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각종 위원회의 기능

제13조(경기력향상위원회)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

1. 그라운드골프 동호인의 경기력향상 기본계획
2.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
3. 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4.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
5. 협회 주관 전국대회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

제14조(심판위원회)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
2. 각종 대회 시 심판 판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심판양성 교육(심판 아카데미)에 관한 사항
4.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

6.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

제15조(기획 · 홍보위원회) 기획·홍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협회 발전을 위한 기획·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
2. 협회 주관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

제16조(여성위원회) 여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여성체육행사에 관한 사항
3.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
4.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
제4장 보 칙

제17조(규정의 준용)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